

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4의3] <신설 2023. 12. 29.>

[시행일: 2025. 1. 1.] 통합관리사업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

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(제25조의2제3항 관련)

1. 통합환경관리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고용자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하는 경우

- 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0조제1항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7조제1항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
- 나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관리인
- 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. 다만,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라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
- 마. 「하수도법」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관리인

2. 제1호가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.

- 가. 해당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‘통합관리 대상 업종’ 과 ‘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’ 을 동시에 영위할 것
- 나. 가목에 따른 ‘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’ 이 영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라 ‘통합관리 대상 업종’ 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닐 것

3.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
- 가.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
- 나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,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

비고

- 1.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.
- 2. 폐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다.